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있던 홍수위의 보고 및 통보 의무와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과 협의대상인 사업 시행 관련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분석 및 평가시 필요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등이 실효된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인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 1) 법에서 위임한 ‘경미한 변경’을 부지의 경계·토지이용계획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로 명시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대상 확대(안 제15조)

- 1)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을 광역철도에서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의 역사로 확대

다. 홍수위의 수위 상황 보고 및 통보 의무 법률 상항에 따른 삭제(안 제20조제1항)

- 1) 법률과 시행령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존재하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라.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분리계약 체결 조항의 법률 상항에 따른 삭제(안 제32조의4제3항)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법에서 분리계약을 규정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

마.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대상 개정(안 제42조)

- 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 대상에 물가 상승 및 사업추진 주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포함(안 별표1)

- 1)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었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포함하기 위해 근거조문을 개정

사. 법정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 2)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대상시설물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부지의 경계가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토지이용계획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3. 불투수층의 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15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의 제20조 제1항을 삭제하고, 기존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종전의 제2항·제3항의 “제1항”을 “법 제22조”로 한다.

제32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를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8의2) 중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시행령”을 “산지일시사용허가(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	법 제79조제1항제1호	200	300	500
등에 반영된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별표 4 제2호나목(종전의 가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9조제1항제1호”를 “법 제7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9조제1항제2호”를 “법 제7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9조제1항제3호”를 “법 제79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법 제79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 방 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79조제2항제1호 의2호	100	200	300
--	---------------------	-----	-----	-----

별표 4 제2호아목(중전의 바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2항제2호”를 “법 제79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생략) <u><신설></u>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해당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u> <u>1. 부지의 경계가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u> <u>2. 토지이용계획이 100분의 10 이상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u> <u>3. 불투수층의 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였을 것</u>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 ----- ----- -----. 1. (현행과 같음) 2. ----- -----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나. (생략)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라.·마. (생략)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① 한강·낙동강·금강 및 영산
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
방환경청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홍
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
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
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
른 철도의 역 시설 중 역
사,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
도의 역사

라.·마. (현행과 같음)

제20조(홍수위의 보고·통보 등)

<삭 제>

①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
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
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생략)

② 삭제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 · 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 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u>300억</u> <u>원 이상인 시·군·구의 사업</u> 2. (생략) <u><신설></u>	----- -----. 1. ----- ----- ----- ----- <u>500억</u> <u>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u> ----- 2. (현행과 같음) <u>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u> <u>57조제1항에 따른 재해복구사</u> <u>업 분·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u> <u>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u> <u>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u> <u>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u> <u>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u> <u>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5118